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533
----------	-------

발의연월일 : 2026. 2. 3.

발 의 자 : 강선영 · 강대식 · 고동진
박준태 · 김 건 · 유용원
이인선 · 이만희 · 정성국
안철수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40세
대위		36세
중위		33세
소위	20세	31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31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 최고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 ----- ----- ----- -----.																																										
<table><tr><th>초임계급</th><th>최저연령</th><th>최고연령</th></tr><tr><td>소령</td><td></td><td>38세</td></tr><tr><td>대위</td><td></td><td>34세</td></tr><tr><td>중위</td><td></td><td>31세</td></tr><tr><td>소위</td><td>20세</td><td>29세</td></tr><tr><td>준위</td><td>20세</td><td>50세</td></tr><tr><td>부사관</td><td>18세</td><td>29세</td></tr></table>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table><tr><th>초임계급</th><th>최저연령</th><th>최고연령</th></tr><tr><td>소령</td><td></td><td>40세</td></tr><tr><td>대위</td><td></td><td>36세</td></tr><tr><td>중위</td><td></td><td>33세</td></tr><tr><td>소위</td><td>---</td><td>31세</td></tr><tr><td>준위</td><td>---</td><td>---</td></tr><tr><td>부사관</td><td>---</td><td>31세</td></tr></table>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40세	대위		36세	중위		33세	소위	---	31세	준위	---	---	부사관	---	31세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38세																																									
대위		34세																																									
중위		31세																																									
소위	20세	29세																																									
준위	20세	50세																																									
부사관	18세	29세																																									
초임계급	최저연령	최고연령																																									
소령		40세																																									
대위		36세																																									
중위		33세																																									
소위	---	31세																																									
준위	---	---																																									
부사관	---	31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u>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u>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② ----- ----- ----- ----- <u>있다.</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